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장미경 의원 외 14명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미경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2023. . .

발 의 자: 장미경·강승수·김민성·김영길
김영태·김원섭·김재우·박교상
박세채·소진혁·신용하·이상호
이지연·장세구·추은희 의원(15명)

1. 제안이유

구미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 나. 로봇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다. 로봇산업 육성사업 실시 및 사무의 위탁과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라. 로봇기업 우대지원에 대한 사항(안 제10조)
- 마. 준용기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대한 사항(안 제11조~제13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 2) 「지방자치법」 제13조
- 3) 「고등교육법」 제2조
-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

나. 부서검토: 신산업정책과, 기업투자과 의견제출(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라. 기 타: 없음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
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주행(원격제어 포함)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인 실외이동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3. “로봇기업”이란 로봇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로봇산업 육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설정
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 시책
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6. 로봇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로봇기술의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로봇산업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로봇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
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실증 사업

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8조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로봇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개발·보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략)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자. (생략)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생략)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생략)

4~7. (생략)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1. 7. 21.]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3. 14.>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중견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3. 14.>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 1. 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
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
정 2016. 1. 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
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
6. 1.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
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

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16. 1. 6.>

[전문개정 2009. 1. 30.]

검 토 의 견 서

부서명 : 신산업정책과, 기업투자과

조 례 명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토 사항 ○ 근거 법령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조 □ 주요 사항 ○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 ○ 육성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 육성사업 및 사무위탁과 예산지원 ○ 로봇기원 우대지원 ○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 검토 결과 ○ 관내 로봇 완제품 제조사 3개사와 부품공급기업 20개사, 협력 가능기업 165개사, 업종전환 가능기업 823개사로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차세대 동력산업인 첨단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본 조례안 제정이 필요함. □ 조례 제(개)정에 따른 향후 ○ 기대효과 : 구미시 로봇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문 제 점 : 해당없음	

구미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안 제9조(예산지원)

- ① 시장은 제8조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로봇 관련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로봇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지원할 수 있다.

1. 「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2. 로봇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3. 로봇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 #### ○ (신산업정책과 첨단소재부품팀) 지방행정주사보 주승현